

기숙사생 생활 수칙 주요 개정 내용 요약 (20260521)

[상·별점 기준표]

구분	현행(기존)	개정(변경)	관련 조항
신설	-	생활원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생활원이 제안을 수용한 학생 <상점 3점>	[별표 1] 상·별점 기준표
	-	- 강제퇴사 유예 기간 중 별점을 받은 기숙사생 <영구퇴사> - 정기퇴사 이후 입사 미신청자가 무단으로 기숙사에 잔류한 학생 및 정기퇴사 이후 개인 물품을 방치한 학생 <영구퇴사>	
	-	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<별점 5점>	
	-	기숙사생 중 타 호실에서 숙박(제공, 제공받는 자), 룸메이트의 양해가 없는 출입 등 <별점 3점>	
세부사항 추가	단체생활 부적합자	단체생활 부적합자 ·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배려 및 양보를 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 <영구퇴사>	[별표 1] 상·별점 기준표
	기숙사 내 전열기, 인화물질 및 위험물, 미허가 물품 반입 및 사용	냉장고(미니 냉장고 포함) <별점 5점>	
	기물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비품 무단 이동(원상회복)	기물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비품 무단 이동(원상회복 및 실비 변상) <별점 3점>	
변경	기숙사 내 흡연 (호실 및 2층 테라스 포함) <별점 7점>	기숙사 내 흡연 (호실 및 2층 테라스 포함) <영구퇴사>	[별표 1] 상·별점 기준표
	만취 귀사 후 기숙사 내에서 학생 품위를 손상한 자(구토, 주사 등) <별점 2점>	만취 귀사 후 기숙사 내에서 학생 품위를 손상한 자(구토, 주사 등) <별점 3점>	
	입사 서약서 미제출 <별점 3점>	입사서약서 미제출 <별점 2점>	
	포탈 퇴사 미신청 <별점 3점>	포탈 퇴사 미신청 <별점 2점>	

[생활 수칙]

구분	주요 개정 및 변경 내용 (세부 사항은 생활수칙 파일 참고)	관련 조항
출입 및 외박	시험기간 24시간 개방 : 중간·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출입 통제 해제	제2장 제4조 (기숙사 출입 및 생활)
	외박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본인에게 있음	
음식 및 청결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간이취사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활 쓰레기 배출 시 벌점 부과 - 택배 포장재 무단 투기 시 벌점 부과 -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(변질된 음식물, 내용물 대비 과도한 용기 등) 보관을 금지하며,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변질된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며, 폐기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개인에게 있다. - 취사 물품은 배부된 보관 박스 외의 공간에 보관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여 보관된 물품은 관리자가 폐기할 수 있다.(제1기숙사 해당) 	제2장 제6조 (공용시설 이용 준수사항)
공용시설 이용	독서실 : 자리 독점 금지	제2장 제6조 (공용시설 이용 준수사항)
	체력단련실 : 02:00 이후에는 취침 등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 되므로 이용 자제	
	세미나실 : 이용 후 정리 정돈을 해야한다.	
	간이 취사실 : 02:00시 이후에는 취침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되므로 이용 자제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택배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착 후 7일 이내 수령하지 않은 택배물은 관리자가 폐기할 수 있다. - 택배 포장재를 택배실에 무단투기할 경우 벌점 부과 	
상벌점 및 징계 처분	본인의 벌점 현황을 본교 포탈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본인에게 있다.	제5장 제15조 (상·벌점제도)
	벌점은 차기 년도 입사 선발 점수에 반영된다.	
CCTV 및 개인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CTV열람 :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결과 통지 - 비용 부담 : 열람 자료 제공을 위한 모자이크 조치 비용은 신청자 부담 - 수사기관 제공 : 영장, 법원 제출 명령 등 적법 절차 거친 후에만 제공 	제3장 제12조 (개인영상정보 확인 및 처리)